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고 제2023-1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예규 제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소속 구성원(관악구의회 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관악구의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2)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③ 의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

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 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을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의 고충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사건경위 파악 및 자료수집)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한다.

제8조의2(사이버신고창구)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의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의 조사를 요청할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 ‘공공 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

련하여 상담·고충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사무국장은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

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⑧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사항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제3조제3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상담원, 사건조사자 등은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업무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업무 공간

분리, 피해자 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장이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관악구의회 소속 직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자 3명 이하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제3조제3호다목의 1) 내지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리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성희롱·성폭력 해당여부 판단(2차 피해 포함) 및 감사부서 조사 의뢰
2. 피해자 상담에 따른 치료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4.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사건 당사자와 관계(친인척, 직근 상급자 등)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사건 당사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을 때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이나 위원 본인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① 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illegible]

